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5. 18.(수)
담당 부서	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	책임자	과 장 김병수 (044-202-7432)
		담당자	사무관 정다비 (044-202-7436)

「공정채용법」의 구체적인 적용범위,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5.18.(수) 헤럴드경제, “공정채용법, 30인미만 사업장도 적용”

- 윤석열 정부의 ‘공정채용법’이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.
- 이 법은 현행 ‘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(채용절차법)’을 보완해 채용과 고용 세습을 없애고 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의 특례, 가산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골자다....(중략)
- 이에 비해 공정채용법은 절차를 넘어 채용 내용의 공정까지 담고 있다.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,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을 뿌리뽑는 것이 그 핵심이다. 친인척간 고용승계를 하거나 전·현직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채용된 사람의 입사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. ...(중략)

2. 설명 내용

□ 정부는 「공정채용법」의 구체적인 적용범위, 내용 등을 결정한 바 없음

- 다만, 「공정채용법」 제정이 국정과제인 만큼, 향후 전문가 논의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임